

WTO 體制下的 紛爭解決節次

李 東 鎬*

1. WTO 出帆과 新 國際交易 秩序
2. WTO 의 意思決定體制
3. WTO組織과 紛爭解決機構(DSB)
4. 紛爭解決의 節次
5. 結論

1. WTO 出帆과 新 國際交易秩序

1994년 4월 12-15일 모로코의 Marrakesh에서 개최된 UR 각료회의를 끝으로, Punta del Este에서 출범하여 7년 반동안 끌어온 UR협상이 공식으로 마무리 되었다. 전세계 125개국 (GATT 가입국 123개국 포함)의 대표들이 참가한 UR 각료회의는 현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를 신설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47년 10월 제정되어 그간 47여년 동안 세계 자유무역의 신장에 기여해온 GATT 체제는 그 막을 내리고 신GATT체제라 할 수 있는 WTO시대가 전개되게 되었다.

WTO는 UR최종협정의 이행을 통하여, 국제무역에 관한 UN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산물은 물론 서비스, 知的財産權 등 새로운 交易課題를 包括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 法, 制度, 慣行등의 明瞭性을 제고시킴으로써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 서울市立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확립 하여 세계교역을 증진하려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경제의 재건과 교역증대를 목표로 1943년 7월 Bretton Woods 협정을 체결하여 소위 삼두체제인 외환금융분야의 국제통화기금, 경제개발분야의 국제부흥개발은행과 함께 국제무역분야를 관할할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설립하려하였으나, 미국 행정부가 동협정안을 미국의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실현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Bretton Woods체제가 ITO의 발족을 전제로 구성되었으므로 ITO의 실패는 GATT의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GATT는 變形된 臨時體制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WTO의 신설은 GATT의 변형된 체제에 중지부를 찍고 세시대에 걸맞게 완성된 ITO의 뒤늦은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WTO 체제의 출범은 결국 세계무역이 하나의 규범 즉, WTO協定과 하나의 機構로서 WTO로 통일되어 하나의 시장 경제권이 뒤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과 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기반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WTO라는 하나의 공동규범을 세계 여러나라가 수용하며, 이를 준수함에 있어 WTO는 어떠한 意思決定 體制를 갖고 있으며, 회원국간에 무역과 관련된 意思의 衝突, 즉 무역관련 紛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調停 解決하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WTO의 意思決定 體制

1) 신속한 의사결정 방식과 否定的 總意(Negative Consensus)

WTO는 기본적으로 과거 GATT가 시행해온 바와 같은 滿場一致(consensus)에 따른 합의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소위 否定的總意(Negative consensus)제도를 도입하여 참석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에 의해서 반대하지 않는 한, 그 안건은 의안으로서 상정된다. 다시말하면, 만장일치에 의하지 않고는 의안의 심의를 저지할 수 없고, 따라서 표결에 부치면 과반수 미달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案件이라도 만장일치에 의한 부결, 즉 否定的總意에 의하지 않고는 의안의 상정자체를 저지할 수 없다.

또한 어떤 議案이 上程되었을 때, 어떤 회원국도 특별히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

는다면, 그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따로 만장일치 합의절차를 밟지를 않는다.

따라서, 어떤 안건도 어느 한 회원국이라도 공식으로 그 안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그 안건은 일반적인 多數決(majority)의 原則에 의해서 처리된다.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 만약 전 회원국이 총의로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否定的總意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안건은 당연히 상정되어 심의되며, 협정문상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 방식을 채택하여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되고 과반수 미만이면 부결되는 것은 일반적인 다수결에 의한 의결절차와 같다. 1) 결국 부정적총의 제도가 갖는 의미는 의안의 상정에 있어 소수의견이 보다 존중되고 동시에 GATT체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한 두 회원국의 반대에 봉착하더라도 유효한 아무런 결의를 할 수 없는 패단을 없애고, 다수결에 의한 신속한 결의안 채택을 통해 활력있는 기구의 운용이 가능해 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결방식을 통한 의사결정제도는 GATT가 WTO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게 하는, 신속한 그리고 집행력 있는 의사결정방식이라고 하겠다(제 9조 1항). 과거의 GATT는 의사결정방식으로서 전원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어, 어느 한 국가라도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바, 자국에 불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WTO의 경우,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있어 時限性이 존재하는 것 또한 GATT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가령, 협정문과 관련된 義務免除요청의 경우, 각료회의에 제출된 그러한 안건은 90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만장일치에 의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되어 있으나, 90일이 지나도록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국 3/4 다수결에 의해서 의결을 할 수 있게되는 시한성을 갖는다.

또한, WTO의 모든 회원국은 WTO設立協定과 附屬書에 대한 改正案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각료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한, 90일 이내에 滿場一致로 결정하고 이를 회원국의 수락을 위해 각회원국에 회부해야만 하는데, 만약 기간내에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2/3 다수결에 의해 결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안건은 90일 이내에 표결할 경우는 滿場一致(consensus)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90일이 지난다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3의 다수결에 의해 과감히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게하고 있다.

또한 WTO에서는 일부 회원국이 자국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WTO의 결정사항을 수락하지

1) 그러나 WTO 협정문의 해석에 관한 사항(제 9조 2항)이나, 또는 회원국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9조3항)과 같은 중요한 事案에 대해서는 단순 과반수가 아닌 3/4 다수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않을 경우, 해당사안이 다자체제에 위협을 주는 등 WTO에 중요한 경우에는 3/4이상의 동의로서 수락시한을 설정한 다음, 이 時限內에 이를 수락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WTO를 脫退해야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력한 의사결정력을 행사하여 국제무역에 관한 UN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WTO가 국제교역에 관한 UN으로 지칭될 수 있는 것은 WTO가 과거의 GATT와는 달리 회원국간의 紛爭을 효율적으로 해결 조정함에 있어 일부 회원국의 협정위반에 대하여 이와같은 강력한 制裁를 가할 수 있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종래의 GATT 체제에서는 볼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一括受諾에 따른 會員義務의 均等化

WTO협정은 체제의 안정된 출발을 위해 WTO협정의 일부를 留保하거나 혹은 條件附로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WTO협정의 수락이나 회원으로의 가입여부는 一括採擇(Single Undertaking)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조건부 수락이나 일부조건을 유보한채 회원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괄수락의 원칙은 最終議定書의 제 4항('accepted as a whole')과

WTO 設立協定 제16조5항('No reservations')에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1986년 9월의 Punta del Este 閣僚宣言에 더욱 명확히 규정되고 있다. 즉,

'The launching, the conduc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shall be treated as parts of a single undertaking' (각료선언 Part I b(ii))

이라하여, WTO협정의 모든 부문은 전체협정과 불가분의관계에 있으며, 이에따라 WTO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비준동의안은 전체를 단일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게 됨으로써 회원국들의 批准에 따라 안정된 WTO출범이 가능해진 것이다.

과거 ITO의 경우, GATT 협정과는 별개로 ITO의 설립을 각국이 비준하는 형태였으나, 금번 WTO의 경우는 WTO 설립협정과 UR 타결협정이 하나로 묶여져 이를 일괄수락하여야 하는 까닭에, WTO설립협정의 비준에 반대한다는 것은 곧바로 UR 협상결과 전체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가 UR 타결협정을 비준할 것으로 보여 WTO의 출범은 확실시된다고 하겠다.

3) 平等主義와 祖父條項(grandfathering)의 폐지

이번 WTO 체제하에서는 어떤 회의에서든 모든 회원국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경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에 관계없이 하나의 투표권만을 갖는다. 소위 경제면에서의 UN이라고 하는 WTO에서 안정보장 이사회와 拒否權과 같은, 경제적 실력에 부응하는 어떤 차별이나 특권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회원국은 완전히 평등한 입장에서 WTO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또한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점은 한편으로 미국의 국내여론의 일부가 미국의 WTO에의 참여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소위 祖父條項(grandfathering)²⁾이라 하여 GATT 체제하에서는 주요 경제대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몇몇 관행을 GATT의 원칙과 相馳되더라도 既得權으로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WTO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조부조항은 일체 인정되지 않았다.

GATT 체제하에서 주요선진국에게 조부조항이 인정된 이유는, GATT 발족 이전부터 존재하던 일부 기존 국내조치들을 GATT 발족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케하되, 단계적으로 개정절차를 통해, 이를 GATT의 규정과 조화 일치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었다.

4) WTO 協定에의 國內法 合致 義務

WTO협정 제 16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국내법규를 WTO협정에 合致(conformity)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상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WTO 규정에 인정되지 않는 일방적 무역보복조치나 WTO협정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관세 및 비관세 방벽들은 이를 개정해 나가야할 의무가 부과되는 셈이다. 물론 이때 그러한 국내법이 WTO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유권적 해석은 당사국이 아니라 WTO 만이 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WTO의 결정은 다룰 수 없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때, WTO에서 그 것이 WTO협정의 기본정신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반드시 유권적으로 검토평가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헌법 6조는 國際主義를 선언하고 있어, 헌법상 적절하게 체결된 국제조약은 국내법

2) WTO 출범에 따라, GATT-1947이 GATT-1994로 흡수되면서 GATT 출범 당시의 조부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GATT의 暫定適用議定書(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를 명시적으로 제외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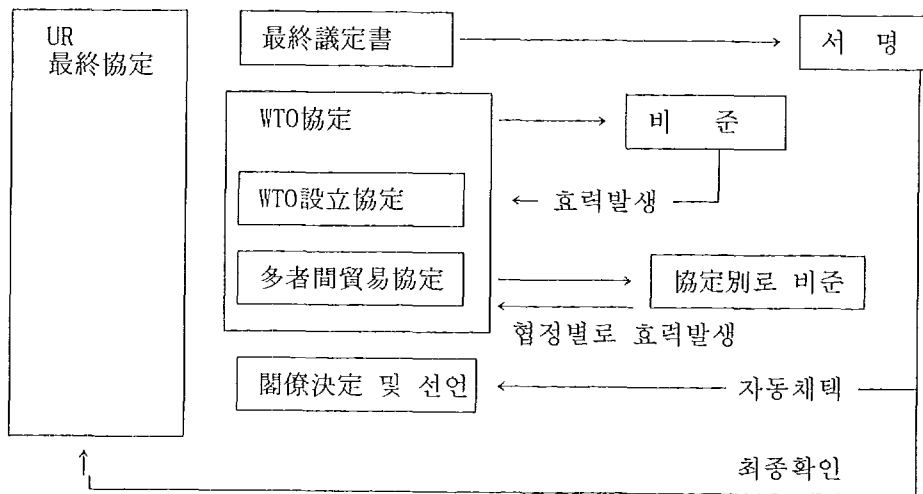
따라서 위 의정서가 자동적으로 그효력을 상실 함으로써 WTO 체제하에서는 어떤 조부조항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Paragraph 1(a)) 다만, 유일한 예외로써 미국에 대해 Jones 법안의 일부를 5년간 잠정적으로 허용할 것을 내용으로 한 GATT-94, Paragraph 3의 규정이 있다. 그 내용은 미국 沿岸海運에 있어서는 미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에 한하여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도 잠정인정 기간인 5년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존속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선언함으로써, 구태어 위 16조4항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WTO협정은 新法優先의 원칙에 의해서 기존 국내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자동적으로 갖게되며, WTO협정내용과 상치되는 과거의 모든 국내법에 대해,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들 국내법을 WTO 협정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고쳐나가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미국의 경우, 외국과 체결된 국제조약이라 하더라도 州法등 국내입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전혀 그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³⁾

3. WTO조직과 紛爭解決機構(DSB)

WTO체제가 基礎하고 있는 UR 最終協定文(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의 구성을 보면, UR 最終議定書, WTO 協定(WTO 設立協定, 多者間 貿易協定, 數者間 貿易協定), 關係決定 및 宣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1> 참조)

그림-1. UR 최종 협정문의 내용



3) 미국에 있어서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충돌문제는 전통적으로 국내법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어, 국제 조약의 수용에는 별도의 국내 입법조치가 뒤따라야만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WTO협정문 16조 4항은 이러한 미국의 전통과 배치되고 국내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미국 의회에서 비준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미 하원에서 '轉換立法'(Transformation Legislation)'이 추진중에 있고, 이는 국제조약과 국내 법이 충돌할 경우, 국내법을 우선적용하는 원칙정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 WTO 協定文은 前文 및 16개 조항의 WTO 設立協定(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과 17개 附屬書(Annexes)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특히 WTO의 조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협정문 제4조는 WTO가 회원국간의 분쟁해결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

WTO는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 조정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세계경제정책 결정에 있어 더욱 높은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IMF나 IBRD와 같은 Bretton Woods 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각료선언)

WTO는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최소 2년에 한번 개최하게 되어있는 閣僚 理事會(Ministrial Conference)가 있으며,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의 및 협정도 체결할 수 있으며(5조), 각료이사회는 WTO협정하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 의결권을 갖으며, 이를 정점으로 <그림-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4조)

一般 理事會(the General Council)는 각료회의가 休會 중인 동안 필요에 따라 열리게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각료회의의 업무를 대행하는 常設機構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일반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紛爭解決機構(DSB)로 개최되어 회원국간의 무역紛爭을 해결하거나 또는 貿易政策 檢討機構(TPRB)로 개최되어 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 정책 및 관행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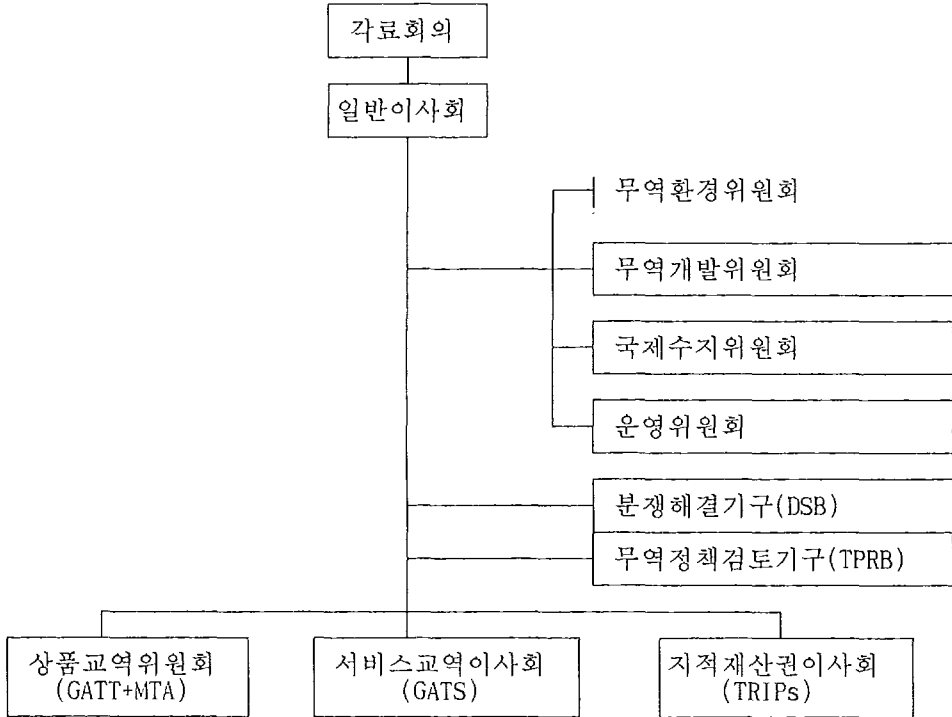
따라서 WTO체제하의 모든 紛爭은 마땅히, 심의기관인 一般理事會(General Council)에 부의하기 이전에 그 하부기구인 상설 紛爭解決 機構(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서 紛爭解決諒解規程(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을 근거로 모든 회원국간의 紛爭문제를 심의조정하고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紛爭해결 기구(DSB)에서는 독자적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필요한 節次와 규정을 제정하여 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紛爭해결과 관련하여, GATT 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명확한 주된 규정 조항이 없어 분쟁 해결 節次가 여러 다른 조항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으나, WTO 협정에서는 紛爭解決節次 및 능력을 대폭확충 강화하는 紛爭解決 諒解規程(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이 附屬書(AnnexII)로 채택되어 紛爭해결기구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紛爭해결 諒解規程(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은 WTO 협정의 17개 부속서(Annexes) 중 제 2부속서로서, 동 규정은 27개 조문(Article)과 4개의 부록(Appendix)으로 되어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협정위반에 대한 유권적 해석:

그림-2. WTO 機構의 構成



- ① WTO 의 모든 회원국들은 WTO협정에 준거한 자국의 이익이 침해 되는 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본 양해규정 및 節次를 원용하고,
- ② 어느 회원국도 본 양해규칙의 節次에 따른 紛爭해결에 의거하지 않고는, 협정위반이 발생 하여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관련된 협정상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릴 수 없으며,
- ③ 모든 판결은 紛爭해결 기구가 채택한 패널(pannel) 또는 上訴 機構에 대한 보고서상의 조사결과 혹은 본양해규정에 의거하여 내려진 仲裁(Arbitration)의 判定(Decision)에 따라야 하며,
- ④ 패널 報告書를 비롯한 모든 紛爭해결의 최종적인 결정은, 협정에서 특별히 정한 회원국의 否定的總意에 의한 결정이 없는 한(unless negativly consensed),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나. 協定 違反에 대한 制裁措置

WTO체제하에서는 어느 회원국이 협정을 위반한 경우에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되어있다. 과거 GATT는 공산품만을 관할하고 있어 보복조치도 공산품만으로 한정되어 보복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WTO체제에서는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등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交叉報復(Cross Retaliation)을 허용함으로써 협정위반시에 대한 제재조치를 크게 강화하였다. 가령 한국이 미국의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은 한국산 반도체나 자동차 수입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복조치를 강화한만큼 이의 濫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회원국도 독자적으로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는 一方的인 判斷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판단은 반드시 WTO의 紛爭해결기구에서만 하도록하고 있다.

4. 紛爭해결의 節次

1) 協議 (Consultation), 斡旋(Good Offices), 調停(Concilliation), 仲介 (Mediation).

상기 양해규정 제5조는 관련협정에 의한 協議要請(request for consultation)이 있을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응답하고 30일이내에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enter into consultation in good faith)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紛爭해결에 실패했을 경우, 협의요청국은 패널(Pannel)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양해규정 제4조)⁴⁾ 따라서 모든 분쟁해결의 節次는 協議(Consultation)의 요청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며, 협의의 결과 또는 협의 도중에라도 당사국이 합의하면, 알선, 조정, 중개는 물론 패널개최도 요청할 수 있다.

동 양해규정 24조에서, WTO 사무총장이나 DSB의장은 最貧開途國의 요청에 의거하여 紛爭 당사국이 紛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패널구성을 요청할 경우, 패널구성 이전에 斡旋, 調停 및 仲介를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동 규정의 성격으로 보아서 最貧國에 대한 특별節次(Special Procedures involving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에만 국한되는 것이

4) 60일 이전이라도 당사국 모두가 협의(consultation)에 의한 분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합의할 경우, 바로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아닌 WTO나 DSB운영 전체에 원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알선, 조정, 중개등의 節次는 紛爭당사국이 합의하는 한,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패널 설치 이전에 또는 도중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전술한 패널 및 上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60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알선,조정, 중개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국은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며, 그 다음 단계의 紛爭해결 節次인 패널개최를 요구하면 된다. 이상의 모든 節次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제3자도 희망하면 여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

2). 패널(Panel)의 설치

DSB 회의에서 부정적총의(Negative Consensus)에 의해서 부결되지 않는 限, 紛爭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DSB 회의가 개최되기까지는 패널이 설치되어야 한다.

패널은 설치후 10일 이내에, 5인으로 구성할 것을 특별히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3인으로 구성되며, 20일 이내에 패널리스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은 紛爭당사국과 협의후 가장 적합한 패널리스트를 지명하고,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패널구성을 완료하여 이를 관련자에게 통보해야한다.

패널의 調査期間은 패널구성 및 위임사항등에 관한 협의시점으로 부터 최종보고서가 紛爭당사국에 제시되는 시점까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3). 上訴檢討(Appellate Review)制度的 도입(제17조)

패널판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上訴를 담당하는 7인으로 구성되는 上訴機構가 DSB 내에 설치된다. 上訴는 紛爭당사국만이 할 수 있으며, 上訴機構위원은 법률과 국제무역 및 협정상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자로서 어떠한 개별국가의 정부와도 관계를 맺어서는 안되며,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紛爭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일방당사국에 의한 上訴의사의 공식적인 통보일로부터 上訴機構에 의한 판정일까지는 60일을 경과할 수 없게되어 있다.

上訴機構의 검토節次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上訴機構의 보고서는 紛爭당사국의 참여없이 이미 제공된 정보 및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다.

上訴機構는 패널의 결정사항, 결론등을 지지, 수정, 취소도 할 수 있다.

上訴機構 報告書는 DSB가 특별히 다른 결의를 하지않는 한, 회원국들에게 배부되고 이후 30

일 이내에 자동체택된다.

紛爭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한, DSB에 의한 패널설치일로 부터 패널보고서나 上訴보고서의 채택까지는 일반적으로 上訴가 없는 경우는 9개월, 있는 경우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仲裁(Arbitration)

WTO체제는 위의 양해규정 26조에서, 紛爭당사국이 상호합의하면 仲裁節次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한 중재는 商事仲裁(Commercial Arbitration)와는 다른 WTO 체제 내에서의 분쟁의 중재로서 panel의 운용과 관련되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취할 수 있는 간이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DSB 패널의 권고 또는 결정의 내용이 補償(Compensation)이나 讓許의 停止(Suspension of Concession)인 경우, 紛爭의 한 당사자가 이러한 결정이나 권고의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合理的 履行期間을 요청하고, 권고 및 결정체택 후 90일내에 구속력 있는 仲裁(binding arbitration) 節次를 밟을 수 있다. 이는 물론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가능하며, 이러한 중재의 결과는 최종적인 결정으로서 중재에 회부된 안건은 上訴節次를 밟을 수 없다.

이러한 중재는 기존 패널 혹은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중재자에 의해 수행되며, 합리적 기간의 소멸 후 6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중재가 미결된 상태에서 讓許나 기타 권리의무의 적용이 정지될 수는 없다. 紛爭 당사국은 중재자의 결정을 최종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야 한다.(제22조6항)

중재자는 그의 결정을 즉시 DSB에 통보해야 하며, DSB는 중재자가 양허나 기타의 義務 停止를 요청할 경우, 동 요청을 기각할 것을 否定總意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 한, 이를 즉시 승인해야 한다.

5) WTO체제하에서의 商事仲裁制度(Commercial Arbitration)

중래, GATT체제와는 관계없이, 국제무역분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商事仲裁制度(Commercial Arbitration)에 관해서는 현 WTO협정문에서는 특별히 언급된 바 없으나, 전자가 주로 무역관련 기업간의 국제적 민사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반해서, 후자의 제반규정은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경우의 공익의 조정이 주된 내용이 되겠으나, 협정문상 무역에 관련된 회원국간의 어떠한 분규도 심의할 수 있어, 민사상의 이해관계도 그것이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정부 또는 그 대리자가 이를 WTO에 제소할 경우 이는 심의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⁵⁾ WTO체제하에서는 상사중재 판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재심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WTO협정은 회원국간의 무역관련 활동에 대한 공통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본문인 WTO 설립협정과 분야별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부속서들인 多者間 貿易協定(MTA: Multilateral Trade Agreement)과 '數者間協定(PT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수자간 무역협정들은 WTO협정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들 협정을 수락한 개별 회원국에게만 적용될 뿐이다(동 2조3항). 따라서 PTA 들은 실질적으로 WTO 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수자간 협정의 운용이 WTO 의 틀과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보겠다. 현재 WTO 가 인정하는 수자간 협정은 동 부속서(Annex-4)에 예시된 민간항공기 교역협정, 정부조달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쇠고기 협정의 네가지⁶⁾ 뿐이지만 앞으로 일반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수시로 추가될 수 있다고 본다.

종래의 상사중재조항은 쌍무적 협정이며, WTO 설립 협정 2조3항에서 예시한 '數者間協定(PT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WTO 협정문 제 3조1항의 규정⁷⁾에서 말하는 수자간 협정(the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의 개념은 반드시 부속서-4에서 예시하는 것만으로 국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Agreements)이외의 2국간 또는 수개국간에 체결된 모든 국제협약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의 기본 정신이 다자주의 (Multilateralism)에 있었으며, 쌍무주의(Bilateralism)를 배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도적으로 WTO체제의 이념과 부합되는 쌍무적 협약도 그것이 紛爭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이상 이를 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존 상사중재제도는 WTO체제와 양립하며, 다만 현존 중재제도에 의한 중재판정에 불만이 있고 그 불만의 이유가 WTO이념에 비추어 현저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協議(onsultation)를 비롯한 어떠한 紛爭해결 節次를 취할 수 있을 것

5) 상사 중재제도에 의한 중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가 이를 WTO에 제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직 정설이 없으나, 판정의 내용이 WTO의 이념에 배치되는 불공평한 것일 경우 이를 심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쌍무적 협정인 중재의 내용을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WTO에서 제심하는 것은 WTO협정의 정신에 배치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

6) Annex 4에 예시된 PTA는 Trade in Civil Aircraft,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등이다.

7) 협정문 3조1항은 'The WTO shall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and further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nd of the MTAs, and shall also provide the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the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이다.

5. 結論

WTO 紛爭 해결節次는 기존의 GATT 협정의 여러 조항에 산재해 있던 紛爭 해결 규정을 하나의 단일체로 통합하고 특정상황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紛爭 해결節次와 특별紛爭 해결節次간의 상충가능성에 대비하여 節次선택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GATT 산하 개별협정별로 가기 규정되어 있는 紛爭 해결節次를 WTO 산하의 紛爭 해결기구 (DSB)로 일원화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되었다.

WTO 紛爭 해결節次의 강화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으로서는, 분쟁 해결 節次의 時限을 설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패널진행을 포함하는 해결이 가능 해졌고, 개별 국가에 의한 一方的 措置가 억제됨으로써 미국의 슈퍼 301조 등과 같은 보복수단은 통상압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소지가 감소되게 되었다. 또한, 중간검토 과정의 도입으로 패널의 결정사항을 공개하고 조사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분규내용에 관한 정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紛爭 당사국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양질의 객관적 보고서 작성을 통해 紛爭 당사국의 권익보호가 객관적 기준에 입각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上訴檢討 制度를 설정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패널보고서의 자동체택이 가져다줄 수 있는 敗訴國의 불이익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엄격한 節次의 설정으로 和解와 協商을 기초로 하는 紛爭 해결節次의 기능을 정지시킬 우려가 있고, 上訴제도의 남용은 패널의 권위와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보복의 自動承認을 인정함으로써 提訴國에 의한 보복행위의 濫用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방향은, 紛爭 해결節次의 강화로 인하여, WTO협정상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각종 보조금, 산업기술지원정책, 수량제한조치 등에 관해 제소가 증대할 전망이다므로, 국내의 무역 및 산업지원제도등 각종 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紛爭 발생시 공동이해관계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체널을 구축해야 하며, 특히 紛爭 해결과정에서 제 3국으로서의 역할 및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참여하는 것이 한국문제 상정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되며, 국제무역법이나 국제무역정책 또는 패널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해야 할 것이다. (끝)

參 考 文 獻

경제기획원 :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 1993.12

蔡旭: 紛爭해결節次, UR 총점검 최종협정의 분야별 평가(증보판), 1993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무역紛爭의 현황과 GATT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11

----- : WTO 출범과 신고역질서, 분야별내용과 시사점, 1994.7.

柳盛根: 'WTO의 紛爭해결기구 (DSB)' -I,II,III.

仲裁, 제18권 제 9,10,11호, 대한상사중재원

GATT/Trade Negotiations Committee: Multinational Trade Organization: The Uruguay Round, April, 1994.